

융합학과 운영에 관한 내규

제 1조(목적)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 BK21 관련 융합학과 전임 교원의 행정업무처리, 승진 및 재임용 평가, 교수업적평가 등 융합학과 운영전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BK21사업의 겸직교원에 관한 특칙) BK21사업 참여를 위해 대학원 융합학과로 전보된 교원은 당해사업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종전의 소속학과(또는 단과대학 및 부서)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3조(행정업무) BK21사업과 관련하여 대학원 융합학과로 전보된 교원의 행정업무는 융합학과로 전보되기 이전소속(겸직부서)의 부서에서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한다.

제 4조(승진 및 재임용 평가) ① 융합학과 소속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평가는 전보되기 이전소속(겸직부서)에서 부서장이 주관하여 실시하고, 대학원장의 의견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
② 승진 및 재임용 평가시 전보되기 이전소속의 강화된 별도의 승진 및 재임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경우 그 별도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.

제 5조(업적평가) ① 교수업적평가시 대학원장은 융합학과 소속 전임교원의 평가단위별 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되며, 대학원장은 전보되기 이전소속 평가단위별 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에게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일임할 수 있다.

② 교수업적평가시 전보되기 이전소속의 강화된 별도의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경우 그 별도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.

제 6조(학생지도) 융합학과 소속 전임교원은 이전소속(겸직부서) 학부학생의 학생진로 상담 및 학사지도등 학생지도 전반의 업무를 담당한다.

제 7조(교수채용) ① 융합학과 소속 전임교원의 이전소속(겸직부서) 학과에서 해당 교원의 전공과 동일 또는 유사분야에 해당하는 교원을 충원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전보교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대형국책과제(BK21, MRC, SRC등) 사업 수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교수채용이 필요한 경우 각 사업단은 사업단장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장에게 충원요청을 의뢰하고, 대학장은 교무처와 협의하여 채용인원 및 채용전공을 결정한다.

③ 교수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소속 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모든 제반업무를 실시한다.

제 8조(업무상 겸직교원) “교내 겸직교원 규정”에 의거하여 겸직된 교원은 본 내규에 적용받지 않는다.

제 9조(보칙)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

부 칙

1. 본 내규는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